

< 회원조합 총회개최 적법성 확인에 관한 규약 (연합회) >

회원조합 총회개최 적법성 확인에 관한 규약

제정 2015년 12월 8일

제1조 【목적】 이 규약은 정관 제53조 2항에 따라 회원조합의 총회개최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적용범위】 ① 우리연합회 소속 회원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.
② 정기, 임시, 창립총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 【방법】 ① 회원조합은 총회개최일 7일전에 연합회에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.
② 연합회는 총회개최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연합회 임원 또는 직원 1인을 지정하여 회원조합 총회에 입회한다.

제4조 【입회인의 직무】 ① 입회인은 그 총회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표준정관례에 의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② 입회인은 위 ①항의 적법성과 총회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1의 '00조합 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' 를 발부하여야 한다.

제5조 【의사록 인증】 회원조합이 총회의 의사를 등기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을 참조하여야 한다.

부칙(2015.12.8.)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약은 2016년 법무부 고시일(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의한)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

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

조 합 명	
주 소	

총 회 명			
총회일시		총회장소	
재적인원		참석인원	
주요의결			

입회인 ○○○은(한국대학생협연합회) 상기와 같이 진행된 ○○대학생협 총회에 입회하여
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



입 회 인 : ○ ○ ○ (인)